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5
----------	-----

2022. 3. 22.
자치행정위원회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원병일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치매 조기발견, 치매가족지원,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등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치매예방 및 관리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치매관리사업 비용 지원 및 지원 대상을 구체화함 (안 제6조 및 제7조)
- 치매관리사업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0조~제13조)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원활한 치매관리 및 조기발견 (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의 주요 내용과 의회에서 발주한 ‘남양주시 치매 예방·관리 선도모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한 친화적 환경 구축 강화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치매관리사업의 비용 지원과 지원대상,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과 지역사회 협력 자원 발굴 및 연계 사업을 포함시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기능을 한층 강화함.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9.69%로 전국 평균인 10.33%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한 타당한 조례라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